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2016. 9.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화장품산업 현황	2
III. 실태 및 문제점	5
① 유기농화장품 국내 인증제도 미비	5
②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명확한 인지 곤란	6
IV. 개선방안	8
①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8
②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기준 명확화	9
V. 조치사항 및 기한	10
※ 참고자료	11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화장품산업 첨단 수출 산업화**」
- ▷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서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수요를 만들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음. **화장품의 경우 인증기준 등 미비한 제도를 조속히 보완** 하기 바람('16.7.7,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통령 말씀)
- ▷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제안 현황 : 146건(2012. 7. ~ 2016. 8.)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고조, 품질향상, 한류열풍 등으로 수출선도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 친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져 유기농화장품 시장규모 지속 확대**

※ '14년 유기농화장품 매출액 7,171억원('12년 매출액 5,086억원 대비 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및 2014년 화장품 제조·유통 조사)

※ 유기농제품은 소비자 인식 증가, 유통구조 확대, 대체재 부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시장규모 확대('13년 83.6억 달러 → '20년 156.9억 달러 추정, 연평균 9.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시장 전망 보고)

그러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국내인증제도가 미비하여 유기농화장품 판매·수출에 애로 발생 및 소비자의 명확한 인지 곤란**

○ 특히, 국내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없어 유기농화장품 제조업체의 제품 입증 부담 및 외국 인증을 취득하는데 따른 고충 발생

○ 유기농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고, 완제품이 유기농인지, 일부 원료가 유기농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식별이 어려움

※ 국산화장품의 54%, 수입화장품의 92%가 일반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소비자원, 유기농화장품 안전실태조사 2013년)

이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유기농화장품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사례 발굴('16. 3월) → 민원 및 제도 분석(3월) → 전문가·업계관계자 의견청취(4월) → 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4월~8월)

II

화장품산업 현황

□ 화장품의 종류 및 정의

- 현행 화장품 관련 법령은 국내 제조·수입·판매되는 화장품의 종류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구분(「화장품법」 제2조)

종 류	정 의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인체에 사용 되는 물품
기능성화장품	피부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유기농화장품의 요건(「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 95% 이상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유래 원료, 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대체 곤란한 합성원료는 5%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함
-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중 95% 이상이 되어야함(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현황

- 기술·품질 향상 및 한류열풍 등으로 2014년 국내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8조 9,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규모*	6,308,416	6,589,797	7,022,077	7,624,181	8,177,819
생 산	6,014,551	6,358,617	7,122,666	7,972,072	8,970,370
수 출	690,211	891,476	1,202,383	1,412,229	1,895,872
수 입	984,076	1,095,658	1,101,795	1,064,338	1,103,320
무역수지	-293,865	-204,180	110,588	347,891	792,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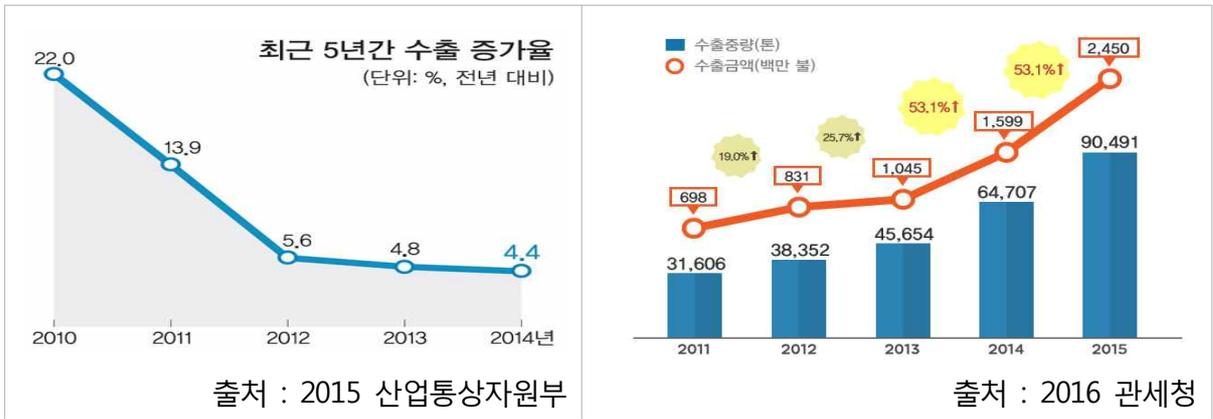
* 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 화장품산업 수출 동향

- 세계 경기 침체, 유가하락, 중국과 경쟁심화, 조선·자동차·철강 등 수출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 지속 감소(2010년 22.0% → 2014년 4.4%)
- 그러나 화장품 산업은 다품종 신제품 개발, 시장 확대 및 한국 제품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수출 대폭 증가(2015년 전년대비 53.1% 증가)

< 전산업 수출 증가율 대비 화장품산업 수출 증가율 비교 >



□ 유기농화장품 매출 규모

- 최근 3년간 전체 화장품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16.4% ↑)
-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인 기능성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매출액 대폭 증가(기능성화장품 36.7% ↑, 유기농화장품 40.9% ↑)

< 화장품 매출액 증가 추이 >



* 유기농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는 '12년 465개, '13년 433개, '14년 409개로 조사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 2014년 화장품 제조유통조사 보고서 재구성)

□ 국내 인정 유기농 인증기관 현황

- 유기농 원료 인증기관으로 외국 정부 등에서 인정¹⁾한 인증²⁾기관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음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외국 정부(미국, EU,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 354개 기관('13.12.31. 기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 등록된 인증기관 29개('12.10.25. 기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유기농화장품 국내 인증기관은 없음**

<주요 국가별 유기농화장품 인증관리제도>

구분	법적 근거	주무기관	인정기관	인증기관	적용범위	인증로고
미국	유기식품생산법 (OFPA) 국가유기식품 프로그램(NOP)	농무부 (USDA)	농무부마케팅 지원청 (USDA-AMS)	주정부, 민간인증기관	농산물 가공품 화장품	
EU	ECC No.2092/91 (유럽경제공동체 유기품질관리규정)	유럽의회 (Europe Community)	유럽의회 (Europe Community)	민간인증기관	농산물 가공품 화장품	인증기관 별로 상이
일본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농림수산업성 (MAFF)	소비안전 기술센터	민간인증기관	농산물 가공품	
호주	유기 및 바이오-다이내믹 제품에 관한 규정	농림수산업부	호주검역청 (ACIS)	민간인증기관	농산물 가공품 화장품	인증기관 별로 상이
한국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수산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농산물 가공품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없음	없음	화장품	없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유기농화장품 안전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 1) **인정**(認定, Accreditation) :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국제 기준 등에 적합하게 조직을 갖추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증명해주는 것
- 2) **인증**(認證, Certification) : 특정 제품이 **원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주로 시험검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인증)

Ⅲ 실태 및 문제점

1. 유기농화장품 국내 인증제도 미비

□ 유기농화장품 판매·수출시 제품 증명 부담 초래

- 유기농화장품 국내 인증제도 및 기관이 없어 제품 **광고 및 수출 상담시 유기농화장품 입증에 대한 고충 발생**

< 유기농화장품 국내 인증제도 미비에 따른 고충사례 >

- ▷ 유기농·천연화장품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인증 및 관련 레이블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시장진입 제한요소**로 작용(KOTRA, 주요국 천연화장품 시장동향, '15.8.)
- ▷ 수출상담시 해외바이어들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유기농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임에도 유기농 제품 인증이 없어 고부가가치 상품임에도 더 낮은 가격에 계약 체결**(유기농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의견청취, '16.4.6.)
- ▷ 판매업체에서 유기농화장품 인증서를 요구하였으나 **인증서가 없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유기농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의견청취, '16.4.20.)

* 제출자료 목록 : 유기농가 인증서, 개별원료 유기농 인증서, 원료가공 공정도, 제조공정도, 함량계산표, 용매제값, 유기농원료 구입량 및 거래명세 등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원료 검증은 사후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제조의 원료, 공정, 설비, 포장 및 보관 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므로 **각 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체계 필요**(대한뷰티산업진흥원, '12.9.)

□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

-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국내 인증이 없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받을 경우, 인증수수료 부담 및 심사기간에 따른 시간적 손실 발생**

< 유기농화장품 외국 인증기관 인증에 따른 고충사례 >

- ▷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을 받으려면 원료, 제형, 품질관리, 생산, 포장, 판매 등 각 부분에 실사를 받고, 인증 비용이 **1개 품목에 400만원 이상** 들어감. 그러나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인증이 연장되어 막대한 부담 발생**(언론보도, '13.6.12.)
- ▷ 외국 인증기관에 지불한 인증비용은 원가에 적용되어 화장품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킴**(언론보도 : '13.5.30, '13.6.12, '15.9.9, '15.12.31, '16.1.4)
- ▷ 해외 유기농 인증의 경우 심사비, 등록비, 제품시험 비용 외에도 **대행사 현지 출장비, 컨설팅 비용 등으로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됨, 대행사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빈발(화장품제조판매업체 의견제출, '16.4.6.)

2.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명확한 인지 곤란

유기농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 빈발

○ 유기농화장품 실태조사 결과 **일반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하는 규정위반 사례 다수 확인**

※ 국산화장품의 54%, 수입화장품의 92%가 일반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한국소비자원, 유기농화장품 안전실태조사, '13.6.)

<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계	국산화장품	수입화장품
조사대상	50(100%)	24(100%)	26(100%)
규정위반	35(70%)	13(54%)	24(92%)

※ 2015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총 503건 중 기능성·유기농 의약품 오인광고로 인한 처분이 201건(식품의약품안전처, '16.1.)

○ 유기농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되 입증자료만 일정기관 보관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신 초래

※ 국산 유기농화장품은 인증을 받지 않고도 '유기농'이라는 표시할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할 때 **정말 유기농 제품인지 의심스러움**(국민행복제안, '15.3.)

다양한 유기농 해외인증 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 곤란

○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로고가 국내 유통되는 유기농 화장품에 표시·광고되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시 혼란 가중**

- ▷ 소비자가 해외인증기관의 인증마크 정보를 숙지한 뒤, 제품구입시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국내 유기농화장품 시장의 현실(언론보도, '13.5.30)
- ▷ 해외 유기농화장품을 수입하려고 함, 외국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인지 궁금함(국민신문고 민원 : '13.1, '13.8, '14.4, '15.3, '16.2, '16.3)

< 해외 유기농인증기관 마크(예시) >



□ 유기농화장품 유기농원료의 비율 등 표시 불명확

- 기관에 따라 인증기준 및 유해물질 허용범위가 다름
- 제품전체가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인증 받은 원료를 일부 함유하고 있는지, 전체구성 원료 중 유기농 원료가 몇 % 함유되었는지 확인 곤란

- ▷ 한 성분만 유기농 인증을 받았음에도 제품 자체가 유기농인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기농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유기농화장품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기 바람(국민행복제안, '12.8.)
- ▷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 유기농 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 ▲ 국내 인증기관 지정 ▲ 소비자 지향적 표시 제도 도입이 필요(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3.6.3.)

IV 개선방안

1.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 유기농화장품의 원료재배에서부터 제품생산, 판매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사전검증 할 수 있는 **인증제도 마련**

< 방안(예시) >

-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는** 방안

※ 참고 : 기능성화장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제조품) 및 보고서 제출(수입품)이 의무화됨(11페이지 참고)

< 개정조문 예시 : 「화장품법」 >

현 행	개선안(예시)
<p>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신설></p>	<p>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u>제4조의 2(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기농화장품 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농화장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p>

2.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기준 명확화

- 소비자가 유기농화장품을 식별, 비교,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유기농원료 구성비율을 명확하게 표시

< 방안 예시 >

전체 구성원료 중 유기농 원료가 10%인 경우 : '유기농화장품(10%)' 으로 표시

< 개정조문 예시 >

현 행	개선안(예시)
<p>「화장품법」</p> <p>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p> <p>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p> <p>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p>	<p>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p> <p>9.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유기농화장품"이라는 글자</p> <p>10.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p> <p>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p>
<p>「화장품법 시행규칙」</p> <p>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p> <p>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5. <u>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u></p>	<p>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p> <p>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5. <u>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료 중 유기농 원료의 비율 및 그 원료의 함량</u></p>
<p>「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p> <p><9페이지 유기농화장품 관련></p> <p>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p> <p><신설></p>	<p>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p> <p>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화장품'라는 표시 옆에 전체 구성원료 중 유기농 원료 구성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예시 : 유기농화장품(10%)></p>

- 유기농화장품 구분이 용이하도록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 개발

<인증 마크 사례>

우수화장품 제조기준 인증	식품안전관리 HACCP인증	유기식품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V 조치 사항 및 기한

- 권고 일자: 2016. 9. 5.
- 조치 기한: 2017. 12.
- 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사항	관련법령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 유기농화장품의 원료재배에서부터 제품생산, 판매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사전검증 할 수 있는 인증제도 마련	「화장품법」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명확화	○ 유기농화장품을 식별, 비교,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전체구성 원료중 유기농 원료 구성비율을 명확하게 표시 ○ 유기농화장품 구분이 용이하도록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 개발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1

1.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에서** 수행(「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신청인이 인증신청서 및 법정 첨부서류(생산계획서 및 경영자료 등)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서 발급**(「농림축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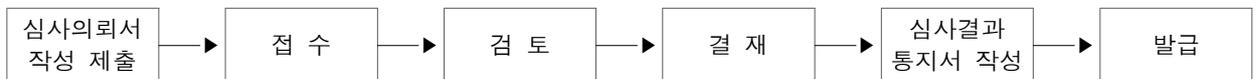
<유기농산물의 인증 절차>



2.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도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 신청인이 심사의뢰서 및 법정 첨부서류(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통지서 작성·발급**(「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절차>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化妆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6항 관련)

1. 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제조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각각 하지 않고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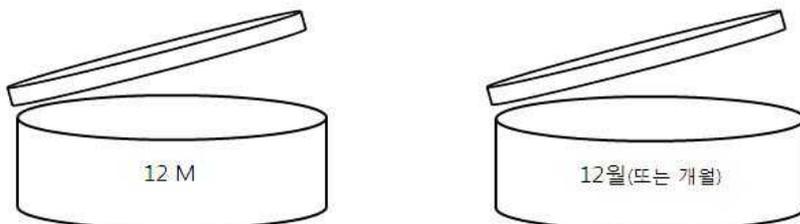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농 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나.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2. "식물 원료"란 식물(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료)"란 동물 그 자체(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하고,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4. "미네랄 원료"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석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한다.
5. "식물유래, 동물성유래 원료"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를 말한다.
6. "미네랄유래 원료"란 제4호의 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별표 1의 원료를 말한다.

제3조(사용 원료) ①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별표 4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유기농 원료
2.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유래 원료
4.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유래 원료
5. 물

② 합성원료는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별표 2의 합성원료에 한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유기농화장품의 원료조성) ① 유기농화장품은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9조(자료의 보존)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중 유기농화장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금지
-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주요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지침서